

생명을 위하여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통권 22호)
발행인 염수정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전화 02-727-2350~4 팩스 02-727-2355 이메일 vitavia@hanmail.net
홈페이지 www.forlife.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tavia.seoul
디자인 썬더셀

2020
10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교회는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가톨릭 생명대학원 교수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들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두고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염려를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왜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면, 차별 금지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일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성경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 34)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법안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위 간성(intersex)이라고 하는 성의 표현이 모호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다면, 남성 혹은 여성의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학적인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은 그저 우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완성에 도달합니다. 남녀의 구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상호적인 자기 증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풍요로운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는 혼인 공동체와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바로 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근본적인 구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랑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근본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다음 호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